

주 장 사 항

본인은 도로를 주행할에 있어 운전자의 안전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회진교차로내에 차량의 소통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회진선에 가까운 차로 선상에서 안전운행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의 위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의 양상을 보더라도 차수 즉 회전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차량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차로로 정상 주행하였으며, 우측 후방에서 상대측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시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현장에서 예비에 어려운 말을 하며, 본인이 피리하여 병행에 거쳤다는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다했다면 차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도로상에서 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후방까지 주의하기엔 시야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주행한 차량을 제가 주의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불가능의 차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상대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량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상대차가 제 앞부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했다면 저는 양보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고직전 전에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운전자는 여러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여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치를 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난간 후에 재운행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할에 있어서 최대한 안전을 중시하며, 운전을 하면서 후방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대차량에 대해 제가 병행운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상대측의 일방과실도 봄이 당하고 생각됩니다.

제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정지했거나, 햇들을 틀었을 것이지만 제자리로 운행중인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보이지도 않는 사각지대에서 제 차를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제 차 조수석 뒷부분은 충격한 상대측의 일방과실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2

송 지혜